

# 회 의 록

<b>일 시</b>	2018.02.12.(월) 14:00	<b>장 소</b>	본관4층 402호	<b>회차</b>	2017-6차
<b>참석위원</b>	신부식(위원장), 양기덕 위원, 김함겸 위원, 안규철 위원, 고운배 위원, 안중문 위원, 김동균(운영팀장), 김동현(서기)				
<b>회의안건</b>	1.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예산 2.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 3.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수탁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위원장이 2017학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건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무를 진행하다.					
<b>회의내용</b>					
<p>운영위원회성원이 되었으므로, 신부식위원장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14:00)</p> <p>■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예산 심의</p> <p>2017학년도 산학협력단의 본예산 1,533,199천원 및 추경예산6,193,374천원으로 최종예산은 세입·세출 각각7,726,573천원으로 확정됨을 설명하다.</p> <p>산학협력단의 수익률은 10.12%(예정)으로 전년대비 2% 가량 인상된 것을 보이나 결산시 일부 조정이 예상 됨. 국가 재정지원사업으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4,276백만원, 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wcc)육성사업 370백만원, 글로벌현장학습사업 419백만원의 성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p> <p>상기 추가경정에 대한 위원장의 세부예산서 설명 후 위원들에게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p> <p>○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내용</p> <p>Q)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의 수익률이 인상된 것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가 영향이 있는 것인가?(안규철)</p> <p>A) 정확한 수익률은 결산이 이루어져야 확정지을 수 있겠으나, 수익률 산정시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수익률은 반영이 되지 않으며, 이번에 인상된 원인은 대학의 사업에 편성되었던 평생학습관 및 지자체어린이집이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이 되어 수익률이 인상되었음.(위원장)</p> <p>Q)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은가?(고운배)</p> <p>A) 산학협력단의 사업이 중.하반기에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져 진행되므로 하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최종 추경 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신부식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신부식위원장이 위원들에서 2016학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의견을 묻고 동의 및 재청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함겸위원이 동의, 안규철위원이 재청하여 산학협력단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p>					

■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 심의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의 본예산의 세입·세출 각각 1,547,233천원 확정됨을 설명하다.

산학협력단의 본예산 반영 시 국가재정지원사업 및 미 확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8~9월 중 추가경정을 하여야 함을 설명.

2018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위원장의 세부예산서 설명 후 위원들에게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 심의 내용

Q) 2018학년도는 전기 이월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안규철)

A) 전기 2017학년도는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이월사업이 없으므로 차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김동현 간사)

Q) 국가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은 반영이 안된것인가?(안종문)

A) 국가재정지원사업 등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반영하지 않음.(김동현)

Q)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반영하는 것이 예산서상 합당하다고 본다.(안종문)

A)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에 참고하여 반영하겠음.(김동현)

2018학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의견을 묻고 동의 및 재청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안규철위원이 동의하고 고운배위원이 재청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위원장이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종전에 대학과 지자체와의 계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보육수탁 및 평생학습관, 화정영어마을이 2017년 부로 산학협력단과 지자체와의 계약이 됨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정 (안)을 참고로 위원들에게 설명.

위원들에게 수탁시설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 및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고운배위원 : ‘수탁시설’이란 명칭보다는 ‘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재 사용되는 수탁시설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수탁시설 ‘운영규칙’이 아니라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규정’이란 문구로 정정해 주기 바란다.

▶ 안규철위원 : 수탁시설 자문위원회 규정(안) 제6조(회의) 2항에 의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기관 이기에 의결의 문구는 삭제해 주기 바란다.

▶ 안종문위원 : 수탁시설운영규칙 제10조(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문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이 조문의 불필요한 내용 정리가 될거라 생각됨.

▶ 위원장 : 위원분들의 세심한 자문과 검토로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정 및 규칙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2018년부터는 대학 법인이 아닌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정을 가지고 안산시화정영어마을 외 6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수탁시설운영규칙(규정) 및 자문위원회 규정은 수정 후 위원들에게 별도로 메일로 송부하여 확인 하겠으며, 이 운영규정은 2018.02.12.부터 시행하겠음.

○ 신부식위원장이 추가 의견유무를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주기도문으로 폐회하다(16:20).

2018. 02. 12.(월)

서기	단장
김동현	신부식